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58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우종혁 의원 등 6인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25. 9. 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대표발의자 : 우종혁 의원)

가.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산업, 일상 전반에 걸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전략산업으로도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기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여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10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개요

- 우종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제정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챗GPT, 딥시크 등의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영향력 또한 나날이 커지고 있음.
 - 더욱이 인공지능은 단순한 혁신 기술이 아닌 국가의 안보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게 되면서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거대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시행 2026. 1. 22.][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을 제정함으로써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한편, 「지방자치법」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을 소관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 근거 등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강남구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제정안은 국가 정책에 발맞춰 관계 법령상의 지자체의 사무를 구체화한 자치조례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 사료됨.

II. 주요 내용 검토

□ 총칙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제정안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한 총칙 규정으로서,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음. 다만, 2026. 1. 22.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상 조례 위임 사항은 없어 이 조례의 성격은 자치조례라 할 수 있으므로 목적 규정상 법을 인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삭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안 제2조의 정의 규정과 연계하여 일부 띄어쓰기 수정이 필요해 보임.
(“인공지능 기술→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산업”)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데, 자치조례의 경우에도 국가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할 수 있음.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유사·중복 다른 조례와의 상충을 피하고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한 것으로 타당함.

참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미래 산업 기반 기업에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미래 산업 기반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중복 사업이 혼재되어 시행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설계와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위 규정들은 강남구의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 사료됨.

□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임.

○ 미래혁신 성장전략으로서 인공지능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인바,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발굴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인공지능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인공지능 응용 산업 분야는 ‘정보통신업’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조업’ 2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15.4%, ‘금융 및 보험업’ 11.6%, ‘교육 서비스업’ 9.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 인공지능 사업 운영상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5점 척도 기준 ‘AI 인력 부족’이 4.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데이터 확보 및 품질 문제’가 3.98점으로 높게 나타남.

□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면서,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

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인공지능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정책이나 사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은 인정된다 보이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유사 성격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은 적정하다고 보임.

□ 그 밖에 사항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6년 1월 22일로 규정한 점은 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되며,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한 수정의견은 아래 표와 같음.

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u>」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u>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u>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u>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u>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u>강남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 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u>(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u>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 <u>제1항의 경우에는</u> 「서울특별시</p>	<p>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u>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u>(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 8. (생략)</p>

제 정 안	수 정 의 견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한다.

Ⅲ. 종합 의견

- 본 제정안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산업을 강남구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라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창의적인 환경 조성 및 유효한 정책 발굴과 지원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다만, 내년 법 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대통령령이 마련되게 되면 그에 맞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입법 추이를 관심 있게 살펴 필요시 강남구 조례에 관련 사항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58호

제안일자 : 2025.9.1.

제 안 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을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수정 및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간결하고 통일된 표현으로 조문을 수정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수정(안 제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술”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기술”로, “인공지능 산업”을 “인공지능산업”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강남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기본계획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기술 ----- ----- ----- ----- 인공지능산업 ----- ----- -----.</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 -----.</p>
<p>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제5조(기본계획) ① ----- ----- -----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p>
<p>1. ~ 8. (생략)</p>	<p>1. ~ 8. (현행과 같음)</p>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한다.

② ---- 기본계획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서울특

별시,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군·구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우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8
----------	-----

발의연월일: 2025. 8. 14.

발 의 자: 우종혁·김현정·이도희·
김형곤·강을석·윤석민 의원
(이상 6인)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은 행정, 산업, 일상 전반에 걸쳐 핵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전략산업으로도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기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하여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위원회가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서울특

별시,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군·구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